

양계분야의 검정사업 추진현황과 오리산업 도입시 유의할 점



▣ 이 종 응 과장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종계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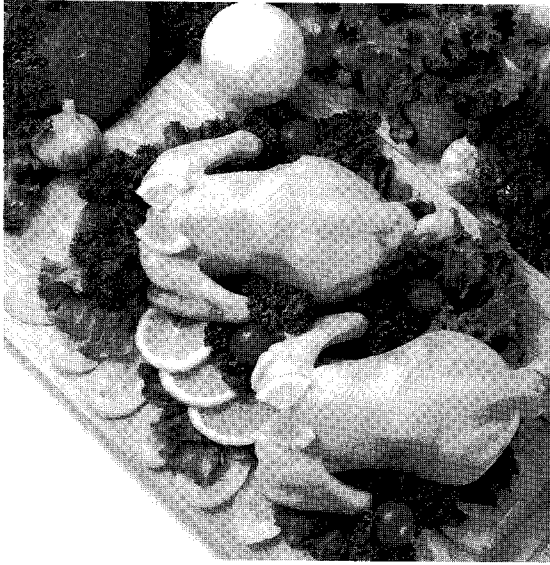
국내 종계업은 373개 등록종계장에서 7,421천수의 종계를 사육중에 있다. (종계Data-Base 조사사업결과, 2009년 5월말 현재 기준, 육용·준육용·산란종계 총합) 또한 2008년 한해동안 종계병아리는 6,065천수(암컷 기준)가 입식되었고, 종계배합사료는 270천톤이 생산되어 양계용 배합사료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종계업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 일부 재래품종을 제외하고 외국육종회사로부터 원종계(GPS : Grand Parent Stock)와 종계(PS : Parent Stock)를 도입하여 실용계(CC : Commercial Chick)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는 계열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종계장이 실용계 종란과 병아리 납품계약을 통한 계열사와의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산란계의 경우는 대부분 자체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생산하여 실용계 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닭검정의 추진배경

닭검정은 “일반검정”, “능력검정”, “순계검정”,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닭 검정에 필요한 기준은 축산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등 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공고하게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와 대한양계협회 검정위원회가 닭검정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닭검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실시요령을 정리한 것이 “닭검정기준”이며, 이는 농수산부고시 제85-59(1985년 11월 21일)호로 제정되었고 현재는 농림부





고시 제2002-26(2002년 5월 25일)호가 공고되어 이에 준하여 닭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종계일반검정의 정의 및 목적

종계일반검정은 축산법시행규칙 제11조(가축의 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업 등록에 필요한 종계의 확인검정을 말하며, 대한양계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계일반검정을 통해 종계로써의 자질을 확인하고 질병이 없는 건강한 종계가 종계장 시설에서 사육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계통을 유지함과 실용계농가의 병아리 보급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체계적인 종계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종계일반검정의 시행방법

종계일반검정은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로 구분해 실시하게 된다. 원종계(GPS)와 순계(PL: Pure Line)는 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검정·심의받으며, 종계(PS)는 대한양계협회장이 지정(위촉)한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서류심사는 농장에서 제출한 종계검정신청서와 병아리 계통보증서(혈통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마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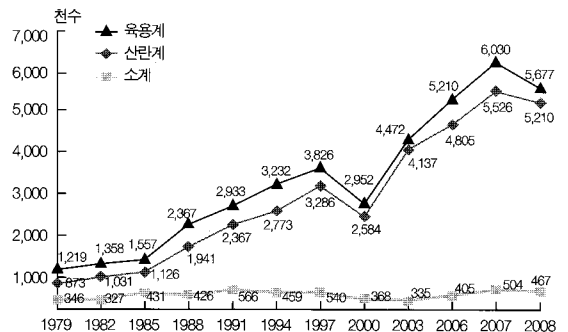
사육형태, 종계의 주령, 암수의 사육비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심사가 진행되는데 세부사항은 [표1]과 같다. 또한 [표2]의 실적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검정

[표1] 종계일반검정 심사 확인사항

- 마리수 : 검정신청수수와 사육관리대상상의 수수 및 실제 사육수수 조사
- 사육형태, 각종 대장의 활용상태, 위생방역상태(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및 검색 등 이행사항)등의 확인
- 종계유효기간이 경과한 닭 및 미검정 닭을 종계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종계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18개월, 육용계는 16개월로 한다.)
- 암수의 사육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암수입식비율이 평사인 경우 100분지 100이상, 케이지인 경우 100분지 60이상)

[표2] 종계일반검정 실적사항

-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
-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닭
-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Chart 1] 연도별 종계일반검정 실적 현황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며, 저축될 경우에는 종계로 활용치 못하도록 해당시·군·구에 통보하며 검정신청에 대한 일건 서류를 반려한다.

◎오리산업 도입시 유의할 점

오리는 5대 축종의 하나로 그 산업적 규모가 큰 쪽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다분한 축종이다. 이를 증명하듯 종축업 및 개량 대상 가축에 오리를 추가하는 축산법시행령이 개정(2008년 12월 31일)되었다.

이로써 오리 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위생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의 척도인 종오리일반검정을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을 종계일반검정의 실례를 들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겠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란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자(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다. 또한 오리산업의 대승적 차원에서도 종오리검정은 필수사항임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농가홍보와 종오리 사양 및 질병교육이 수반되어 농가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종오리 검정능가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겠다.

종오리검정확인서가 있는 종오리장에 백신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정부지원(보조)사업의 특혜가 주어지게

하는 방안이다. 종계의 경우는 종축시설현대화사업의 참여조건으로 종계검정실적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운영하는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의 평가항목중 품질관리부분에 업체별 종계일반검정 확인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AI등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정이 확인된 종오리에 한하여 종오리가격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제시해 본다.

셋째, 지속적으로 종오리일반검정에 관한 사항을 농가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종계의 경우는 월간양계를 통해 분기별로 종계일반검정실적을 게재하여 기간별 경제주령이 유효한 종계수수, 농장명, 농장주, 품종(육용, 산란)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원종계장에서 분양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검정종계를 파악하여 검정을 독려하는 공문을 수시로 개별 발송함으로써 미검정계군을 최소화하고 있다.

넷째, 종오리 일반검정사업을 DB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 및 집행능력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 예상된다.

종오리업 및 개량 대상으로써 종오리의 일반검정이 초입길에 진입하였다. 아무쪼록 종오리의 일반검정사업이 안정적인 궤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